

그리스의 公醫制度*

성 영 곤

관동대 교양과

The Greek Public Physicians

SUNG Young-gon

Department of Liberal Arts

Kwan Dong University

ABSTRACT

The public physicians of ancient Greece, their functions, their nomenclature, even their existence have been the objects of historical debate since sixteenth century. That the Greeks had public physician is now beyond dispute, but the origin and purpose of this medical system in the sources are highly controversial.

Diodorus remarks in his *Universal History* that Charondas had surpassed all previous law-givers — who had only gone so far as to specify that private citizens should be treated by doctors at public expense — by including in his law code for Thurii free school education. Yet nothing else is known of these early law-givers, either where or when they lived or further details of their law codes. On the other hand, Herodotus demonstrates in his account of Democedes, that certain poleis were prepared to pay money to this good physician.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 of the payment, modern scholars have payed attention to Aristophanes' play, "The Acharnians". The definite statement of a late scholiast on Acharnians, that doctors who were elected publicly to cure without fee, supports the hypothesis of free health treatment for the citizens of Athens.

In this paper I have reexamined the hypothesis through the statements of Xenophon and Plato, with the help of archeological evidences. My point is that the hypothesis is not correct, and Cohn-Haft's doubts on the existence of a system of free medical care in the ancient Greece seems to be justified. I will show that the hire of public physicians was governed by circumstances arising from a comparative scarcity of physicians. In any case, the appointments of public physicians who evidently had some kind of official connection with the poleis are very interesting phenomena regarding the concept of self-policy or autonomy of Greek medicine.

* 이 논문은 1997학년도 관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

I.

고전기 이후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에 公醫¹⁾가 존재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지만, 公醫制度가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하는 등의 문제는 미해결의 난제로 남아 있다.²⁾ 이 문제와 직접 관련된 고대사료는 디오도로스의 「보편사」로, 투리오이의 입법자인 카론다스³⁾가 시민이 병들었을 때 공공비용으로 치료받게 한 이전의 법전에 무료교육을 추가했다는 것이다.⁴⁾ 카론다스 이전으로 공의제도의 기원이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디오도로스의 이같은 증언을 완전히 무시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힘들다. 왜냐하면 디오도로스보다 3세기 이상 앞선 아리스토텔레스는 카론다스의 업적 중에는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만이 알려졌다고 말하고 있으며,⁵⁾ 현대의 역사가들은 이 전설적인 입법자인 카론다스가 제정했다는 많은 법률들이 실체는 후대의 것임을 밝혀내었기 때문이다.⁶⁾ 사료비판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설령 디오도로스의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이더라도 카론다스 이전의 입법자가 누구이며 그가 제정한 의료제도가 어디서, 얼마나 오래 존속한 것인지, 또 이 제도가 고전기 이후의 공의제도와 얼마나 유사한 것인지 규명할 길은 전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의제도의 기원을 上古期의 마그나 그라키아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무리이며, 대신 디오도로스의 증언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전440년 경에 재건된 투리오이⁷⁾에 공의가

1) *iatrós dēmosiēuóntes*와 *dēmosios iatrós*는 모두 公醫로 번역될 수 있는 용어들이다. 그러나 여러 문헌연구자들이 별 생각 없이 혼용하고 있는 이 용어들은 그 용례에 대한 세심한 구분을 필요로 한다. 동일한 문헌에서 이 양자가 혼용되는 경우는 없으며, 각 용어의 사용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고전기와 헬레니즘기의 문헌에 나타나는 원형태는 전자이며, 후자의 용어는 기원후 1세기부터 5세기 중반까지의 문헌에 나타나는 것으로 주로 로마제국 치하의 이집트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용어가 혼용되어 온 것은 Nanetti의 책임인데, 그녀는 Prosphoneseis라는 빠페루스 문헌을 연구하는 중에 거기 나타난 후자의 용어를 그리스의 *demosiēuóntes*와 동일한 제도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O. Nanetti, "Ricerche sui medici e sulla medicina nei papiri 1," *Aegyptus* 21(1941), 301-314. Cf. L. Cohn-Haft, *The Public Physicians of Ancient Greece* (Massachusetts, 1956), p. 69.

2) V. Nutton, "Continuity or Rediscovery?: The City Physician in Classical Antiquity and Medieval Italy," in *The Town and State Physician in Europe from the Middle Ages to the Enlightenment*, ed. A.W. Russel, *Wolfenbütteler Forschungen*, Band 17 (Wolfenbüttel: Herzog August Bibliothek, 1981), p. 11 이하에는 공의제도에 대한 16세기 이래의 연구사가 요약되어 있다.

3) 이것은 디오도로스의 착오로 생각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II. 95-96 (1274a)에는 카론다스가 자신의 고향인 카타나와 시실리아 및 이탈리아의 여러 폴리스의 입법자로 되어있다. Cf. Cohn-Haft, 앞의 책, p. 8, 주) 21. 이밖에도 카론다스의 개혁의 세부사항에 대해 디오도로스가 잘못 이해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Cf. Nutton, 같은 글, p. 36, 주) 8.

4) Diodoros, 「보편사」 XII. 13.4; 12.4.

5) Aristoteles, 「정치학」 1274b.

6) Cf. F.E. Adcock, "Literary Tradition and Early Greek Code Maker," *Cambridge Historical Journal* 10(1952), p. 238. 또 폴리스가 교사의 봉급을 지불함으로써 전 시민의 아들들이 무료교육을 받도록 했다는 카론다스의 이 새로운 법률이 실제로 시행되었다는 증거도 찾기 힘들다.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헬레니즘기의 테오스의 비문[W. Dittenberger, *Sylogae Inscriptionum Graecarum*, 3rd ed. (Leipzig, 1915-1924), p. 578]이지만, 이 경우에도 무료교육을 위한 재원은 폴리스의 공공기금이 아니라 개인의 회사금이었던 것이다. Cf. Cohn-Haft, 앞의 책, p. 9.

7) 아테나이 주도하의 투리오이 재건에 대해서는 V. Ehrenberg, "The Foundation of Thurii," *American*

있었을 가능성인 것이다.⁸⁾ 이때 마련된 새로운 법률이 카론다스의 공로로 돌려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또 그 재건을 주도한 아테나이인들은 이미 공의의 존재에 친숙해 있었기 때문이다.⁹⁾ 한편 시칠리아 동쪽 해안의 메가라 히블라이아에서 발굴된 전6세기 중반의 비문이 카론다스, 혹은 그 이전의 입법자의 법률과 유관하며 그 비문에 언급된 의사가 최초의 공의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별다른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이 도시가 마그나 그라키아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 이외에는 카론다스와 관계되는 것이 없으며, 이 비문의 어떤 구절도 솜브로티다스라는 이름의 이 의사가 공의였음을 말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¹⁰⁾

그렇다면 기록에 남은 최초의 공의는 데모키데스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¹¹⁾ 헤로도토스는 그가 연속해서 삼년 동안 매년 증액된 막대한 연봉을 받고 아에기나, 아테나이, 사모스 등 세 곳에 고용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각각에서의 고용과정과 그의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¹²⁾ 전6세기에 활약한 데모키데스에 대한 이 기록을 제외하면 공의에 대한 가장 오랜 문헌은 전425년에 발표된 아리스토파네스의 「아카르니아인들」이다. 여기에 ‘공의(δημοσιεύω)’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하고 있으며,¹³⁾ 민주정하의 아테나이의 다양한 생활상들을 보여주는 이 희극작가로부터 비로소 공의의 임무가 무엇인가 밝힐 수 있는 단서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¹⁴⁾ 이 밖에도 몇몇 문헌기록에 단편적으로 언급된 것들이 있지만 공의에 대한 대부분의 증거는 비문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공의들이 어떤 제도적인 틀 안에서 선출되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직접 설명하고 있는 자료는 전무한 형편이다.¹⁵⁾ 그러므로 그리스의 의료제도 및 공의의 역할에 대한 몇가지 결론들은 전반적인 의사의 활동과 사회적, 정치적 제반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배경으로 현존의 해당

Journal of Philology 69(1948), pp. 149-170을 참조할 수 있다.

8) Nutton, 앞 논문, pp. 11-12.

9) 투리오이 가까이 위치하며 경쟁적인 관계에 있던 크로톤 출신의 데모키데스에 대한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비추어 이 무렵의 투리오이에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 의사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큰 것이다. Cf. H. E. Sigerist, *A History of Medicine*, vol. II (Oxford Univ. Press, 1961), pp. 99-101.

10) L. B. Brea & G. P. Carratelli, "Kouros arcaico di Megara Hyblaea," *Ann. Sc. Arch. At.* 24-26 (nos. 8-10) (1946-1948), 59-68. 이 비문의 바닥에 Συμποτιδα το ιατρῶ το Μανδροκλεος라고 새겨져 있는데, Carratelli는 Som[bl]rotidas가 분명히 ‘공의’였다고(p. 67), 또 이오니아 혈통이며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의 사제였다(p. 68)고 주장하고 있다. Cf. Cohn-Haft, 앞의 책, p. 10, 주) 29.

11) Herodotos, 「역사」 III. 131 이하.

12) 사모스에 고용된 직후 키로스 대왕의 아들인 캄비세스의 사모스 정복으로 포로가 된 데모키데스는 신분을 속이고 간첩 있다가 다리우스 왕에게 발탁되어 페르시아 궁정에서 명성을 얻는다. 그런데 캄비세스의 사모스 정복이 전522년의 일이므로 그의 활약기간은 대개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아테나이를 통치하고 폴리크라테스가 사모스를 지배하던 시대로 그의 공의 임명과 보수지급은 참주들에 의한 것으로 짐작된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폴리크라테스에 의해 사모스에 초빙되었다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만, 아테나이의 경우는 분명치 않다.

13) Aristophanes, 「아카르니아인들」 1030행. 한편 Cohn-Haft가 정리한 공의에 대한 비문목록의 첫번째(Doc. No. 1) 비문도 이 무렵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Cf. Cohn-Haft, 앞의 책, p. 76. 이 비문은 일부만이 전해지지만, 13행에 δημοσιεύει[ι]라는 용어가 있다. 또 히포크라테스의 봉사에 대한 아테나이인들의 명예입법, 즉 「아테나이인들의 법령」은 비슷한 시기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헬레니즘기에 씌어진 위서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아리스토파네스 이전의 문헌기록은 현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14)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에 반영된 전5세기 아테나이 사회의 실상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는 Ehrenberg, *The People of Aristophanes* (Oxford, 1943)를 꼽을 수 있다.

15)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아테나이의 國制」에는 官職이나 돈을 받고 공무를 담당한 — 건축분야의 Architekton 같은 — 半官職 어디에도 공의제도가 거론되어 있지 않다. Cf. Cohn-Haft, 앞의 책, p. 42, 주) 47.

기록들을 분석함으로써 추론해 낼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II.

공의제도에 대한 Vercoutre의 선구적인 연구 이후 헬레니즘기의 그리스 도시들은 — 아마도 몇 군데서는 고전기부터 — 무료치료를 위해 의사들을 고용했다는 견해가 암묵리에 받아들여져 왔다.¹⁶⁾ 사회보장에 대한 19세기 말의 관심과 고전고대 문화의 찬란한 과거에 대한 숭배가 그리스의 공의제도를 그렇게 해석하게 만든 것인데,¹⁷⁾ 무료의료혜택이라는 理想에 대한 연구자들의 집착은 앞서 언급한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에 대한 고대말의 註釋書에 바탕하고 있다. '공의'라는 용어를 설명하면서 그 주석가는 "국가에 의해 공공 관리로 임명된 의사는 보수없이 환자를 돌보곤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¹⁸⁾ 그러나 이 주석서의 현대판 편집자인 Rutherford가 추정하듯 이것이 기원 후 400년 무렵의 것이라면¹⁹⁾ 그 주석가는 800여년 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며, 더욱이 그가 근대 학자들이 못 보는 어떤 자료를 참조할 수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공의 제도의 목적은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몇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²⁰⁾

우선 공의들의 의료행위가 무상이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시혜자는 누구였을까? 이론상 가능한 대상은 시민, 자유민, 그리고 거류외인을 포함한 모든 거주자의 셋으로 나누어 진다. 첫번째로 폴리스가 베푸는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은 시민의 특권이었으므로 시민권을 무상의료혜택의 기준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은 실제 운영과정에서 상당한 곤란을 수반한다. 의사가 환자의 시민권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단기 체류자인 공의가 설령 시민명부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이것과의 대조로 환자를 식별할 수는 없었을 것이며, 시민이 아닌 사람이 속여서 무료혜택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했을 것이다.²¹⁾ 의사편에서 직접 식별할 제도적 장치와 강제적인 처벌규정이 없었던 상황은 무료시술혜택을 자유민에게 한정된 두번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리스의 노예는 특별한 복장을 하거나 그 밖의 어떤 식별표식도 하지 않았으므로, 감찰 의사만 있으면 의사 앞에서 얼마든지 자유민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실행가능한 유일한 가능성은 세번째의 모든 거주민, 다시 말해서 시민이던 외국인이던, 노예이던 자유민이던 간에 모두 무료시술의 대상이었다는 주장뿐일 것이다. 그런데 거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료시술이 과연 가능했을까? 무상의료제도의 무제한적인 시행은 상당한 곤란을 수반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이 제도는 불요불급의 환자를 창출하여 소수의 — 대개는 한 폴리스에 한명인 — 공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자가 몰려들게 만들었을 것

16) A. Vercoutre, "La médecine publique dans l'antiquité grecque," *Revue Archéologique* 39(1880), 99-110. pp. 231-246, 309-321, 348-362. 특히 p.108 이하. Cf. Cohn-Haft, 같은 책, p. 1, 주) 3.

17) Cohn-Haft, 같은 책, p. 33.

18) W. G. Rutherford, *Scholia Aristophanica*, vol. II (London, 1896), p. 368. Cf. Cohn-Haft, 같은 책, p. 33, 주) 6.

19) Rutherford, 같은 책, vol. III (London, 1905), p. 368. Cf. Cohn-Haft, 같은 책, p. 33, 주) 7.

20) Cf. Cohn-Haft, 같은 책, p. 37 이하.

21) 아테나이 민회의 경우에도 자격없는 사람이 참석하면 노예로 만들며, 고지한 사람에게 보상한다는 규정이 민회가 시민들만의 심의기구임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Cf. G. Glotz, *Greek City*, trans. N. Mallinson (London, 1929), p. 152.

이며, 부수적으로는 무료인 이상 어떤 환자나 동등하게 보살펴져야 당연한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²²⁾ 이렇다면 시민, 혹은 자유민으로 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나, 거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모두 실제의 운용과정에서는 상당한 곤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시혜대상에 이어 다음으로 살펴 볼 측면은 공의의 연간 수입에 관한 것이다. 헤로도토스는 데모키데스의 연봉이 1탈란톤에서 2탈란톤, 즉 6,000 드라크마에서 12,000 드라크마에 이르는 막대한 것이었음을 말해 주지만, 그가 당시 최고의 의사였다는 부연설명은 이것이 예외적이었음을 함께 말해주고 있으므로,²³⁾ 이 증언은 공의가 받던 평균연봉을 추정하는데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전2세기 팜필리아 지역의 셀로이케이아에서 페르가 출신의 아스클레피아데스가 연봉 천 드라크마를 받았다는 비문기록이 있는데,²⁴⁾ 이 기록을 받아들여 일단 이 정도가 통상적인 공의의 연봉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전3세기의 델로스에서 일용노동자의 연간 수입이 260드라크마, 숙련기술자가 720드라크마, 이름난 예술가는 숙련기술자의 두배 정도였다는 Glotz의 추정²⁵⁾에 견주어 의사의 연간 수입으로는 뜻밖에 작은 것이다. 공의로 임명되었다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의사임을 말하는데, 그가 숙련기술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입을 올렸다면, 전체 의사의 평균 수입은 일용노동자와 크게 차이가 없게 된다. 이렇다면 의사가 돈버는 직업이라는 당대의 기록들은 의미를 잃게 된다. 따라서 공의는 폴리스가 보장한 연봉 외의 별도의 수입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²⁶⁾ 특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추가수입과 관련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환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다. 즉 무료진료가 원칙이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공의가 환자로부터 사례조로 금품을 받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만일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보다도 무료혜택이 필요했던 가난한 사람은 전혀 사례를 하지 못함으로써 냉대 받았을 것이고, 이같은 결과는 공의제도의 원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었다.

무료진료의 시행을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장치 및 보수규정이 미비했다는 이상의 사실들과 함께 공의제도가 무료진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결론짓게 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그리스인들의 사회정책이란 측면을 살펴볼 때 드러난다. 고전기, 혹은 헬레니즘기에 들어서도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시민 전체의 복지증진이란 차원을 넘어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고전기의 아테나이에서는 시민 전체의 복지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시행되었지만,²⁷⁾ 그 연장선에서 무료의료제도를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테나이의 복지정책으로는 민회의 참석이나 배심원 출석에 대한 보수지급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 혜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22) Cohn-Haft가 정리한 Doc. No. 51에 해당되는 비문 19-20행에는 해당 공의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노예나 자유민이나 모두 동등하게 치료했다(εἰς τὸ πᾶσιν ἴσος εἶναι καὶ πένησι καὶ πλουσίοις καὶ δούλοις καὶ ἐλευθέροις)”고 칭송되어 있다. 이 구절로부터 보통의 공의들은 환자를 차별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23) Herodotos, 「역사」 III. 131.

24) Doc. No. 48. 25-26행: ὀψωνι[ασ]θεὶς δραχμὰς χιλίας. Cf. Cohn-Haft, 앞의 책, p. 38, 주) 26.

25) Glotz, *Ancient Greece at Work*, trans. M. R. Dobie (London, 1926), pp. 359-360.

26) 최초로 이같은 입장을 취한 것은 Pohl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Vercoutre는 연간 500내지 700드라크마 정도의 보수가 의사의 평균수입이라고 주장하였다. 양자 모두에게는 셀로이케이아의 비문기록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 R. Pohl, *De graecorum medicis publicis* (Berlin, 1905), pp. 71-72; Vercoutre, 앞 논문, pp. 246, 313-314. Cf. Cohn-Haft, 앞의 책, p. 38, 주) 28; p. 39, 주) 31.

27) 전440, 430년대의 아테나이에서는 시민들에게 곡물의 배급 및 관직수당, 그리고 연극관람수당(theorikon)이 지급되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에 대한 당대인들의 반응과 태도에 대해서는 Ehrenberg, 앞의 책, p. 180 이하를 참조할 수 있다.

켰다고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동등한 참여(ισονομία)를 보장하여 폴리스 전체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반해 무료의료혜택은 사회복지(social welfare), 보다 실제적으로는 계급복지(class welfare)의 성격을 지닌다.²⁸⁾ 가난한 환자가 지불하지 못하는 치료비를 폴리스가 정액으로 공의에게 지불한다는 생각은 부자로부터 징세하여 가난한 자에게 배분다는 생각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데, 이는 아테나이의 복지정책과는 전혀 다른 발상으로 파악되어야 마땅한 것이었다.²⁹⁾ 그리스인들의 사고유형에 사회복지 제도는 자리하고 있지 않았다. 자기보다 못한 동료 시민이 혜택을 누리도록 개인적 자선에는 동의하는 사람도 그런 기부가 법에 의해 빈민들의 권리로 정착되는 것에는 반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지불(pay)하려 하지 않고, 주려고(give)했던 것’이다.³⁰⁾ 이렇듯이 무료의료제도는 그리스적인 사회 질서 및 정책의 일반 경향과도 상반되는 발상이었던 것이다.³¹⁾

마지막으로 검토해 볼 측면은 무료의료제도가 존재했고 그 때문에 공의를 임명했던 것이라면 의료종사자 전체에게 그 영향이 어떻게 미쳤을까 하는 점이다. 모든 의사가 공의일 수는 없었다. 당연히 치료비를 받는 일반 개업의와 공의 사이에는 상당한 구별이 생겨났을 것이고, 환자와 예비환자를 망라한 모든 사람들은 해당 의사가 공의인지 아닌지 상당한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공의가 존재했음을 말해주는 다양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인이 공의였음을 말해주는 구체적인 증거는 드물며, δημοσιεύειν이란 용어가 전5세기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임이 분명한 의사에게 조차 이 용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다.³²⁾ 이 용어에 대한 플라톤의 용례는 더욱 당혹스럽다. 「고르기아스」편 514d-e에서 소크라테스는 공의에 대해 논하는데, 이를 일반 의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의술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초보자와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치가」 259a에서는 공의가 어떤 관직, 혹은 직분의 의미보다는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과 대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용례는 *Corpus Hippocraticum*, 즉 「히포크라테스 전집」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Corpus* 중 유일하게 “급성질병시의 식이법”에 이 용어가 등장하는데,³³⁾ 「고르기아스」편과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되면서 ‘의사가 아닌 사람(οἱ μὴ ἰητροὶ)’과 대비되

28) Cf. Cohn-Haft, 앞의 책, p. 40.

29) 헬레니즘기에 들어서면서 부자들의 기부가 빈번해지지만, 이 역시 빈민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폴리스 전체를 위한 것이었다. Cf. W.W. Tarn, *Hellenistic Civilization*, 3rd ed. (London, 1952), pp. 108-110; “The Social Question in the Third Century,” in *The Hellenistic Age* (Cambridge Univ. Press, 1923), p. 126. 이 문제와 연관된 헬레니즘기의 윤리와 규범에 대해서는 M. Rostovtzeff, *The Social and Economic History of the Hellenistic World* (Oxford, 1941), pp. 1128-1133을 참조할 수 있다.

30) Tarn, 같은 책, pp. 108-109.

31) Edelstein은 ‘사회적 책임의 부재’를 그리스 사회의 중요 특징중 하나로 파악하면서 제도화된 무료의료혜택이 없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대신 그는 신전의술이 이같은 사회적 책임의 일부를 감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연히 그는 공의가 치료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Cf. L. Edelstein, *Asclepius*, vol. II: *Interpretation* (Baltimore, 1945), p. 174 이하.

32) 아리스토파네스가 이 용어를 별다른 설명없이, 그것도 희극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보다 20년 이전의 헤로도토스도 아테나이의 공의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로도토스가 데모키테스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전기중에서 삼년 일달아 세 곳에 고용된 사실을 기록하면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공의의 임무나 성격이 일반 개업의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33) 무료진료에 나선 ‘의식화’된 의사와 일반 개업의를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 결과 주로 후자에 속했던 집단이 주도한 *Corpus*의 집필과 편찬과정에서 공의에 대한 언급이 완전히 삭제되었다고 보는 일부의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해석으로, 「아테나이 인들의 법령」에는 오히려 대역병기 동안의 히포크라테스의 활약이 전자쪽에 가깝게 기술되어 있다. 설령 공의와 일반 개업의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데

고 있는 것이다.³⁴⁾ 이같은 용례들 모두가 공의의 역할이 일반 개업의와 크게 구분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므로,³⁵⁾ 공의제도의 시행은 무료진료라는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이다.

III.

앞 절의 논의에서 공의가 조직화된 무료의료체계와는 무관한 것임이 입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같은 입증과정이 공의의 기능에 대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공의제도는 왜 유지되었으며, 공의라는 칭호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검토해 볼만한 세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의 가능성은 의사가 특정 공동체 내에 머물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두번째는 특정 공동체에서 이미 개업하고 있던 의사의 자질에 대한 공적 보증을 하기 위한 것이며, 세번째는 이미 능력이 널리 인정된 의사를 특정 공동체내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³⁶⁾ 그러나 공의제도의 목적에 대한 이상의 세가지 가능성은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복되는 측면이 많으며, 특히 마지막 세번째는 앞의 둘을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실적인 측면의 구분이기보다는 논리적인 구분인 셈인데, 굳이 이렇게 구분한 것은 의사의 수요와 공급 사이의 불균형이란 측면과 의료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라는 측면을 각각 살피고, 마지막으로 이 양 측면을 결합하여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이 세가지 가능성은 모두 사실과 부합될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각 폴리스들의 사정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양했기 때문이다. 물론 헬레니즘기에 들어서면서는 동질성이 강화되었고,³⁷⁾ 의사들을 명예입법한 여러 비문들 — 일종의 송덕비에 해당되는 — 이 그 형태나 결의과정에서 보이는 유사성은 그같은 동질화의 사례일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폴리스에 해당되는 의료제도는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애초에는 세번째의 목적에 해당되는 것이 해당 폴리스의 사정에 따른 제약으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함으로써 첫번째와 두번째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첫번째의 의도에 의해 마련된 공의제도가 증거의 부족으로 두번째 의도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 세가지의 논리적 가능성을 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하자.

순회진료가 그리스 의사들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인데,³⁸⁾ 의사

올로기적인 것이기 보다는 같은 개업의들 사이에도 있을 수 있는 일종의 경쟁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Cf. Cohn-Haft, 앞의 책, p. 43.

34) 「금성질병시의 식이법」 VI장 (Loeb판 *Hippocrates*, vol. II, p.66).

35) 플라톤의 「법률」 916b에는 의학지식이 필요한 법적 문제를 판결키 위한 위원회가 다루어져 있는데, 이같은 경우 공의들이 당연히 포함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일반의사(iatroi)들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

36) Cf. Cohn-Haft, 앞의 책, p. 45.

37) 이같은 동화과정에서 아테나이의 영향이 컸음은 물론이다. Cf. Glotz, *Greek City*, pp. 389-390. 그러나 전 그리스에 걸친 국가적 통치권력의 부재는 폴리스들의 독자적 전통, 혹은 일탈을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의 차이는 헬레니즘기에 들어서서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38) 하지만 의사별로 순회경로를 정해놓고 순차적으로 돌았는지, 만일 그렇다면 순회의 주기가 정해져 있었는지, 혹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다가 더 이상 환자가 없을 때 다음 장소로 옮겨간 것이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순회경로와 기간을 전혀 정하지 않고 전염병 등의 소문을 듣고 환자가 많은 곳으로 옮겨다닌 것인지 하는 등의 부수적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없다. Cf. Cohn-Haft, 앞의 책, p. 46, 주) 2.

가 항상 부족한 상황에서 보다 많은 환자와 경제적 수입을 찾아 옮겨 다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고, 따라서 공동체의 구성원과 권력당국이 의사를 상주케 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의료를 확보하려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렇듯 공의제도가 항구적이고 안정된 의료혜택을 위한 것이었으며, 필요할 때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의사의 확보를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는 결론은 헬레니즘기의 비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³⁹⁾

우선 공의로서의 재직기간에 대한 것인데,⁴⁰⁾ 사모스사람 메노크리톤은 칼파토스 지역의 브리코스에서 20년 이상 봉사했으며,⁴¹⁾ 라케다이몬인 다미아다스는 라코니아 지역의 기테이온에서 ‘오랫동안’ 봉사했고,⁴²⁾ 페르기아 출신의 어떤 아스클레피오다이는 팜필리아 지역의 셀레우케이아에서,⁴³⁾ 이름을 식별할 수 없는 한 의사는 사모스에서 ‘여러 해 동안’ 봉사했으며,⁴⁴⁾ 코스사람 헤르미아스는 고르틴에서 5년 동안 봉사했다.⁴⁵⁾ 통상적인 공의의 임명기간은 1년이었다고 보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인데,⁴⁶⁾ 그렇다면 권력 남용이 있는 다른 관직과는 달리 공의는 의사가 원하는 한 계속 재선될 수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는 의사가 늘 부족하였고, 따라서 의사의 확보가 — 능력있는 의사이면 더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 의사들 중에서의 선출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 공의제도의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⁴⁷⁾

공의제도의 설치 목적과 관련된 보다 결정적인 결론은 전부 66개에 이르는 관련 비문들에 대한 통계로부터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중 공의에 대한 것임이 분명한 비문은 20개, 공의가 아닌 의사들에 대한 비문은 9개이며, 불명확한 것이 37개인데, 해당 의사들의 시민권 여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된다.⁴⁸⁾

39) Cohn-Haft는 의사들에 대한 명예입법을 규정한 이 비문들이야말로 말로 공의제도의 여러 측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몇가지 결론들을 끌어내고 있다. Cohn-Haft, 같은 책, p. 46 이하.

40) 같은 책, p. 47.

41) Doc. No. 37, 3행.

42) Doc. No. 51, 16행.

43) Doc. No. 48, 26행.

44) Doc. No. 24, 12행.

45) Doc. No. 19, 8행.

46)) 데모키데스의 경력에 대한 헤로도토스의 기록이나 아테나이에서의 공의 선출에 대한 플라톤의 기록들은 1년이 계약 기간이었음을 말해주며, 또 대부분의 관직의 통상적인 임기는 1년이었다. Cf. Platon, 「고르기아스」, 455b, 456b, 514d-e.

47) Doc. No. 42의 비문에는 크레타의 올로오스에서 활동한 어떤 의사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다가 그 곳 시민들의 간청에 설득되어 계속 머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Cf. Cohn-Haft, 앞의 책, p. 47, 주) 15.

48) Cf. Cohn-Haft, 같은 책, p. 51. 해당 의사가 공의라는 사실은 비문에 나타난 명칭 및 선출과정으로부터 알 수 있다. 반면 해당 의사의 행적이 공의와 대비되어 나타날 때는 그가 공의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그밖의 경우들은 불명확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Cf. 같은 책, pp. 5-6. 특히 p. 6의 주) 10. 한편 해당 의사가 활동한 곳의 시민인지 아니면 외지인인지 하는 것은 비교적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 곳 출신이 아닌 경우에는 출신지를 병기하던 관습이나 외국인에게만 부여되는 명예인 외지대리인(πρόξενος) 등의 칭호로부터 알 수 있다. 따라서 시민권 여부가 불명확한 일부 비문이 있는 것은 전적으로 훼손에 따른 기록의 단편성 때문이다. Cf. 같은 책, pp. 51-52.

의사로서의 지위 정치적 지위	공 의	일반의사	불 명
시 민	5	4	9
외 지 인	10	5	25
불 명	5	없음	3

이 표의 두번째 열에 정리된 일반의사의 경우에 그곳 출신과 외부 출신의 비가 4:5라는 사실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인다. 자료의 수가 훨씬 많은 경우에도 이 비율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으며, 설령 다르다 하더라도 의사가 개업장소로 자신의 고향을 택하거나 타 지역을 택하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개인의 사정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반면 첫번째 열의 공의의 경우 그 비가 1:2 (5:10)로 나타난 사실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불명인 경우를 어느 한 쪽으로 몰아줄 때 그 비례치는 최대 1:3 (5:15)으로부터 최소 1:1 (10:10)까지 다양하지만, 어쨌든 반 이상이 타지역 출신이다. 그런데 그곳 출신인 공의 5명중 4명이 코스 출신으로 자기 고향에서 개업한 의사들⁴⁹⁾이었음을 감안하면 코스를 제외한 다른 폴리스에서는 대개 타지역 출신 의사중에서 공의를 지명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유사한 결론은 마지막 열의 의사로서의 직위가 불명인 경우를 살펴봐도 드러난다.⁵⁰⁾ 이 경우는 시민인 의사와 외지인인 의사의 비가 9:25로 공의인 경우의 최대 비례치인 1:3 (5:15)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렇다면 의사들 중에는 외지인이 많았고, 그 비례치의 한도내에서 외지인을 공의로 뽑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이같은 결과는 일시적인 변덕이나 우연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시민 중에 적격자가 있는데도 외지인을 채용한다는 것은 폴리스적인 생활양식과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었으므로, 공의의 임명에 외지인을 선호한 때문으로 보기도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이같은 결과는 그곳 출신의 적격자가 없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며, 따라서 공의제도는 의사가 전혀 없던 폴리스가 외지인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결론으로 이끄는 것이다.

공의제도의 목적에 대한 이같은 결론은 공의의 선출과정에 대한 비문내용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공의를 초빙키 위해 사절이 의사의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던 것이다.⁵¹⁾ 특히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폴리스에서 코스 등에 사절을 보내 의사의 파견을 요청하면 이를 선린의 기회로 삼아 온 코스인들은 적합한 의사를 골라 해당 지역에 파견하였고, 이런 과정을 거쳐 초빙된 의사가 공의로 행세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코스 출신의 헤르미아스가 “당신들 코스인들에 의해 뽑혀서 우리들 코르틴인들에게 보내졌다”는 비문의 내용은 바로 이같은 과정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⁵²⁾

49) Doc. Nos. 11, 12, 39, 60이 여기 해당된다. 유일한 예외는 리키아 지역에서 나온 비문(Doc. No. 53)인데, 로마제국의 치하인 기원후 1세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Cf. Cohn-Haft, 같은 책, pp. 52-53. 따라서 고전기 와 헬레니즘기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의사를 배출하여 자신의 공의로 임용할 수 있었던 곳은 코스 밖에 없었다고 보아도 무관할 것이다.

50) 전부 66개의 비문들중 반 이상인 37개에 해당 의사의 직위가 밝혀져 있지 않는데, 이는 그리스 사회가 공의와 일반 개업의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51) 플라톤이 기록한 바에 따르면 공의가 되고자 하는 의사들은 민회에서 공개적인 경쟁을 거쳐 자신의 솜씨를 입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비문의 기록들은 그와는 전혀 다른 임용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플라톤의 증언은 아테나이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시 검토해 볼 것이다. Cf. Platon, 「고르기아스」 514d-e.

IV.

이상의 논의는 의사의 확보라는 목적과 연관된 공의제도의 한 측면인데, 이제 의사의 자질에 대한 공적 보증이라는 두번째 목적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자. 면허제도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인들이 ‘진짜 의사’와 ‘돌팔이’ 사이의 차이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없는 사실인데, 이같은 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명의 의사들이 확보된 상황에 반영될 때 공의 선출은 이미 활동하고 있던 의사의 자질을 공적으로 보증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능적 측면의 목적을 지나게 된다. 따라서 두번째 가능성이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미 여러 명의 의사들이 해당 지역내에 확보되어 있음을 전제해야 하므로,⁵³⁾ 이 두번째 가능성을 검토해 볼 만한 곳은 첫번째보다 훨씬 줄어든다. 사실상 증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코스와 아테나이 두 곳뿐인 것이다.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며 아스클레피오다이의 전승이 유지된 코스는 고전기 이후 그리스 의학의 중심지로 헬레니즘기에 접어들면서는 의술이 코스의 국가산업이란 양상까지 보였다. 코스 출신의 의사들은 헬레니즘 세계 전역에 산재해 활동하면서 코스의 명성을 날렸고, 이는 그들을 기리는 각지의 비문들⁵⁴⁾과 여러 헬레니즘 국가들의 궁정에서 侍醫로 봉사한 기록들로 입증되고 있다. 당연히 코스인들은 의사가 되기도 용이했고,⁵⁵⁾ 의료의 공급면에서 이곳 주민들이 특혜를 누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코스의 여러 구(demos)에서 자신들의 공의를 기리기 위해 세운 비문들이 여러 개 남아 있는데,⁵⁶⁾ 이중에는 공의들이 전염병에 걸려 꼼짝 못하는 동안 뛰어난 의료활동을 한 크세노티모스라는 의사에 대해 전 코스 시가 감사의 뜻으로 세운 비문도 포함되어 있다.⁵⁷⁾ 이 기록들로부터 코스에는 여러 명의 공의가 공존하고 있었으며, 그 중 몇몇은 특정 데모스 내에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일반적인 기대와 어긋나지 않는 것이지만, 공의제도가 어떻게 유지, 시행되고 있었는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코스의 특수한 상황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그들의 선출과 임용, 그리고 배치과정과 임기, 보수 등에 대해 말해주는 비문증거는 전혀 없으며,⁵⁸⁾ 공의제도의 목적을 규명해 볼만한 어떤 증거도 없는 실정이다. 결국 코스의 비문들로부터는 이곳에서의 의사의 공급이 보다 여유가 있었다는 사실과 공의의 수요도 많았으며, 아마도 데모스 단위로 공의를 임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 이외에 더 얻어내기 힘든 것이다. 그러나 다른 곳보다 의사공급이 용이했던 코스에서도 공의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사실은 상주의사의 확보 이외의 부수적인 기능이 이 제도에 수반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 부수적 기능이 무엇이었는지는 아테나이의 문헌증거들을 검토함으로써 추론될 수 있을 것이다.

52) Doc. No. 19, 2-3행.

53) 여러 명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의료의 수요에 대한 의사의 공급이 충분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상황이 의사의 확보라는 첫번째 취지를 전혀 의미없게 만든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54) Doc. Nos. 10, 18, 19, 20, 28, 29, 31, 46, 63.

55) Cohn-Haft는 헬레니즘기의 비문자료 중에는 코스인이 아니면서 코스에서 훈련 받은 의사는 하나도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Cf. Cohn-Haft, 앞의 책, p. 61, 주) 26.

56) Doc. Nos. 11, 12, 38, 60, 61.

57) Doc. No. 13, 7-10행.

58) Herzog는 Doc. No. 11에 해당되는 비문의 연구를 통해 공의의 봉사기간이 ‘수년간(Jahre lang)’이었다고 말하지만, 이것을 정해진 임기로 보기보다는 연임에 의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Cf. Cohn-Haft, 앞의 책, p. 64, 주) 43.

의사의 공급이란 측면에서 아테나이가 누린 특권적 상황⁵⁹⁾은 문헌기록들⁶⁰⁾과 함께 비문들로 뒷받침되고 있지만,⁶¹⁾ 코스의 증거들과 마찬가지로 이 비문들도 공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⁶²⁾ 반면 플라톤 및 크세노폰의 대화편들과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같은 당대 증언들은 공의제도의 실상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것이다. 플라톤과 크세노폰의 기록에 따르면 여러 명의 공의가 존재했고, 그 선발은 공개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⁶³⁾ 그러나 공의의 선출과정에 대한 이들의 기록은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아리스토파네스의 풍자가 담고있는 내용들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에 대한 연구에서 Ehrenberg는 플라톤과 크세노폰의 서술들을 상당히 불신하면서 이들의 유토피아적인 이상은 묘사된 사실마저 왜곡시켰고, 따라서 양자의 서술들은 아리스토파네스 희극에 묘사된 사실들의 진위여부를 판정하는 간접적인 상황증거로 삼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⁶⁴⁾ 공의의 존재와 임무에 관한 한 이같은 일반론은 오히려 거꾸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아리스토파네스가 공의를 언급하는 문맥부터 살펴보면, 한 농부가 스파르타와 개인적인 강화를 맺고 평화를 누리고 있는 디카이오폴리스에게 찾아와서 전쟁중 자신의 가족들을 잃어버린 데 대해 불평한다. 그리고는 너무 울어서 짓무른 자신의 눈에 넣을 안약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디카이오폴리스는 자신은 공의가 아니라고 말하면서,⁶⁵⁾ 피탈로스에게 가서 호소하라고 충고한다.⁶⁶⁾ 그렇다면 이 구절들로부터 아테나이에 피탈로스라는 공의가 있었고 그가 약을 조제해 주었다는 사실은 드러난다.⁶⁷⁾ 그러나 피탈로스가 누구인지 밝히려고 여러 학자들이 노력했지만 별다른

59) 아테나이에에서 개업한 의사가 많았다는 사실은 크게 두가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 설명은 이곳이 그리스인들의 지적활동의 중심지였다는 점인데, 나중에 알렉산드리아가 그 역할을 상당히 잠식한 헬레니즘기에 들어서서도 아테나이의 지적활력은 여전하였다. Cf. Tarn, 앞의 책, pp. 325-326; Rostortzeff, 앞의 책, p. 221. 또 Green은 고전적 양식과 규범의 보전이란 측면에서 헬레니즘기 말기까지 아테나이가 고전문화의 수호자(guardian of Hellenic Culture)의 역할을 계속 감당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P. Green, *Alexander to Actium* (Univ. of California Press, 1990), p. 568. 따라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한 이같은 지적 활력은 의사들이 장기간 체류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순회진료중에 빠트리지 않고 아테나이에 들리도록 만든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두번째의 설명으로는 아테나이가 그리스 세계에서는 예외적일 정도의 인구를 유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당연히 의료의 수요도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전기 아테나이의 인구에 대해서는 Ehrenberg, *The Greek State* (New York, 1960), p. 33이하를, 헬레니즘기의 인구에 대해서는 Rostortzeff, 앞의 책, pp. 95-96과 p.1329의 주) 30, p. 1119와 p. 1601의 주) 56, 그리고 pp. 1135-1136과 pp. 1604-1605의 주) 70을 참조할 수 있다.

60) Platon, 「법률」 916a-b는 가장 널리 알려진 예이다.

61) Cf. J. Oehler, "Epigraphische Beiträge zur Geschichte des Aerztestandes," *Janus* 14(1909), 4-20, 111-123. 특히 p. 116 이하에는 아테나이에에서 개업한 의사들의 명부가 실려있다.

62) 아테나이에에서의 의사들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G. E. R. Lloyd, *Magic, Reason and Experience* (Cambridge, 1979), pp. 37, 49, 250-255를 참조할 수 있다.

63) 플라톤과 크세노폰은 말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의사를 물리치고 공의로 선출될 가능성을 들어 이 경선과정을 비난하고 있다. Platon, 「고르기아스」 455b, 456b; Xenophon, 「회상록」 IV. 25. 그런데 별도의 위원회가 아닌 민회 앞에서 지원자들간에 상호 토론케 한 뒤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선발과정에 대한 이들의 설명은 논란이 많다. Cf. Cohn-Haft, 앞의 책, pp. 56-61; Nutton, 앞 논문, p. 13.

64) Ehrenberg, *The People of Aristophanes*, p. 6.

65) Aristophanes, 「아카르니아인들」 1030행.

66) 같은 글, 1032행

67) δημοστέυει라는 용어만으로는 그것이 공의를 가리킨다고 보기는 힘든데, 왜냐하면 국가소유의 남성노예들 중에서 치안담당 경찰과 유사한 공공업무를 담당한 일부집단이 δημόσιοι라고 불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리스토파네스도 「Ekklesiazousai」 79행에서 δῆμος, 즉 '공공집행자'라는 용어로 이들을 가리키고 있

합의없이 구구한 추측만이 난무한 형편이다. 그는 같은 희극에서 다시 언급되는데, 장군인 라마르코스가 두통을 호소할 때도 치료책으로 거론되고 있으며,⁶⁸⁾ 또 다른 희극인 「벌떼」에도 치료자로 나타나 있다.⁶⁹⁾ Cohn-Haft는 이 희극의 풍자적인 성격에 비추어 그가 공공수의사(ἰππίατρος)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⁷⁰⁾ 그보다는 명칭한 장군인 라마르코스가 왕진을 부탁한 뒷장면의 문맥상 실력없다고 소문난 돌팔이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⁷¹⁾ 피탈로스가 실력없다고 소문난 공의라면 그에게 가라는 디카이오폴리스의 권고는 희극적 요소를 담는 동시에, 대중들의 심사를 통한 민회에서의 공의선출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플라톤의 비판과도 일맥상통하게 된다. 그러나 피탈로스가 실제 인물이었음은 분명하지만 어떤 인물인지 확정지을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파네스의 짧은 언급들로부터 공의제도의 세부적 사항을 추론하는 것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디카이오폴리스의 그같은 충고는 피탈로스가 모든 시민을 무료치료했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아테나이에서 공의제도를 시행한 목적이었다는 일부의 주장은 너무 단순한 것으로 생각된다.⁷²⁾ 문제가 되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플라톤의 서술들이 실제 상황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먼저 검토한 후에야 보다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이다.⁷³⁾

「고르기아스」편 455b는 소크라테스가 변론술이 별무소용임을 논증하는 구절인데, 의사나 조선 공같은 전문기술자를 뽑기 위해 민회가 열린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의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⁷⁴⁾ 경쟁(αἵρεσις)이란 용어가 등장하지만 실제로 공의의 선출에 경쟁이 수반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구절이다. 반면 고르기아스의 논증을 다룬 456b에는 경선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만, 제시된 상황은 분명 가상적이다. 앞부분의 고르기아스의 주장에 따르면 변론술은 모든 기능적 기술을 지배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자신은 가끔 의사들을 따라가서 약 먹기를 거부하고 수술이나 瀉血을 거부하는 환자들을 의사가 설득시키지 못할 때 변론술로 설득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가능한 일로 보이지만, 이어서 그가 제시하는 상황 — 변론가와 의사가 어떤 폴리스를 방문하여 민회 중에서 자신들이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변론가가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의사로 선출될 수 있으며, 나아가 경쟁에서 항상 이길 수 있다는 — 은 가상의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또 이 두 구절에는 공의라는 용어가 등장치 않는데, δημοσιεύοντες라는 용어가 명백히 나타나 있는 514d-e의 내용에는 공의선출이 경선에 의한 것임을 암시하는 어떤 내용도 없다.⁷⁵⁾ 그 내용은 456b의 고르기아스의 논증에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에 대한 반박이 될 만한 것이다. 이 구절에서 소크라테스는 칼리클레스를 상대로 공의선출을 예로 들어 숙달된 훈련의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즉 사람들은 유능한 의사가 공의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검증을 하는데, 소크라테스의 논

으며, 이와 유사한 δημόκοινος라는 용어가 「Antiphon」, I. 20이나 「Isokrates」, XVII. 15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Cf. Ehrenberg, *The People of Aristophanes*, pp.173-174. 하지만 문맥상 문제의 구절에서의 demosieueon은 분명히 공의, 즉 ho iatros demosieueon을 가리키는 말이다.

68) Aristophanes, 「아카르니아인들」 1122-1223행.

69) Aristophanes, 「벌떼」 1432행. Cf. Ehrenberg, *The People of Aristophanes*, p. 246.

70) Cohn-Haft, 앞의 책, p. 11, 주) 34.

71) Cf. Nutton, 앞 논문, p. 12.

72) Cf. Cohn-Haft, 앞의 책, p. 33.

73) 플라톤은 의사의 재능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의사여야 한다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 아테나이에서는 공의가 되기를 원하는 의사들은 의사들로 구성된 위원회 대신 민회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심사과정에 대한 플라톤의 서술은 구절마다 약간씩 달라 혼동의 여지가 있다.

74) Cf. Cohn-Haft, 앞의 책, p. 57, 주) 12.

75) Cf. 같은 책, 같은 곳.

지는 의사로서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은 변론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고친 환자를 통해 밝혀진다는 것이었다.

한편 크세노폰의 「회상록」에는 재능은 있지만 매사에 소극적인 에우튀데모스를 깨우치는 내용이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어떤 기능에 숙달하려는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 밑에서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런 준비없이 공의가 되려는 사람은 시민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소크라테스는 농담하고 있다.⁷⁶⁾

아테나이 시민 여러분! 저는 아무에게도 의술을 배우지 않았고 어떤 의사도 저의 선생으로 삼으려고 시도한 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의사로부터 무엇 하나 배우는 것을 피해왔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배웠다고 생각되는 것조차 피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공의의 직위를 수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을 실험대상으로 하여 의술을 배우려고 시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플라톤과 크세노폰의 서술들이 아테나이의 실상이었음을 부인할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또 설령 약간의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은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크세노폰으로부터는 공의로 선출되고자 하는 의사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관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플라톤의 서술들로부터는 공의선출이 민회에서의 공개심사를 통해 이루어 졌다고 보아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다만 심사의 조건이 여러 명의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었는지, 아니면 개별 심사로 지원자 개인의 적격여부를 가리는 것이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며, 선출인원에 대해서도 별다른 단서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하의 결론들은 논리적 정합성을 기준으로 한 추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다.

선출인원이 한 명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증거들과 복수형태인 명칭의 사용은 아테나이에서 공의의 선출은 데모스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가능케 한다.⁷⁷⁾ 동일 시점의 아테나이에 여러 명의 공의들이 공존했다는 사실은 비문기록들에 의해서 뒷받침되며,⁷⁸⁾ 모든 데모스가 각자의 공의를 뽑지는 못했겠지만 데모스가 공의선출의 기본 단위였다는 주장은 실제로 개업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범위가 데모스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사실에 견주어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아테나이에서 공의의 임무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결론도 추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제기되는 가능성 중의 하나는 공의제도가 무료의료혜택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겠지만, 이들이 공적으로 보수를 지불 받았던가의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결론이 추론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무료시술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고르기아스와 소크라테스의 언명처럼 최선의 공의들은 데모스의 공공 이익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인정해도 좋을 것이다. 한편 로마제국 치하의 이집트에서 δημόσιος ἰατρός가 담당했던 역할에 견주면 아테나이의 공의(ἰατρός δημοσιεύειν)도 공중보건의 책임자나 검시관 등의 역할을 감당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지만, 이것을 지지할 증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의 「아테나이의 國制」에 수록된 판직에 공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 추측에 대한 반대 증거일 수 있을 것이다.

공의의 선출과정에 대한 플라톤과 크세노폰의 묘사는 상주할 의사를 확보한다는 애초의 목적

76) Xenophon, 「회상록」 IV. 2.

77) Cf. Cohn-Haft, 앞의 책, p. 56.

78) Doc. No. 8, 9-13행: πατριον ἔστιν τοῖς ἰατροῖς ὅσοι δημοσιεύουσιν θύειν τῷ Ἀσκληπιῷ καὶ Γυνείᾳ δις τοῦ ἐνιαυτοῦ ὑπὲρ τε αὐτῶν καὶ τῶν σωμάτων ὧν ἕκαστοι ἰάσαντο. 한편 Doc. No. 13, 7-10행은 코스에도 여러 명의 공의들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Cf. Cohn-Haft, 앞의 책, p. 49, 주) 22.

이 이미 충족되어 있었음을 말해주는데, 그렇다면 아테나이에서는 공의제도가 어떤 기능을 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이미 살펴본 「고르기아스」편의 대화에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된다.⁷⁹⁾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공의가 되려고 하는 의사가 데모스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상황을 검토하도록 했는데, 소크라테스의 논점은 그 사람이 이 직책에 합당한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한마디로 ‘유능한 의사(ικανοὶ ἰατροὶ ὄντες)’ 인가 하는 것이며,⁸⁰⁾ 이같은 논의 과정에서 공의(δημοσιεύειν)는 일반 개업의가 아니라 아직 완전한 의사가 못된 초보자(ἰδιωτεύειν)와 대비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소크라테스의 관심은 개인 개업의와 구별되는 공의의 ‘기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숙련의와 비교되는 공의의 ‘자질’에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대비는 「법률」 916b에 명시된 숙련기술자(demiourgos)와 보통 사람(idiotēs)에 대한 플라톤의 대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따라서 플라톤에게 공의는 의사의 도제나 조수가 아니며, 동시에 미심쩍은 수련과정을 거친 이름만의 의사가 아닌, 독자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갖춘 의사를 의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⁸¹⁾

이같은 해석은 공의에 대한 다른 사료들의 용례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전3세기의 아테나이에서 만들어진 한 비문에는 공의들의 종교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공의들이 공직자로서가 아니라 의사집단의 일원으로서 醫神인 아스클레피오스와 보건의 여신인 히기예이아(Ἥγεια)에게 반 년마다 바치는 국가적 제의에 참여하고 있다.⁸²⁾ 또 로테스 출신인 페이디아스라는 의사를 칭송하는 전4세기 말의 비문은 “그는 자신을 무료로 권위있는 시술을 하는 ‘공공 시술자(δημοσιεύειν δωρεάν)’로 제공함으로써 아테나이에 대해 그가 가진 선의를 드러내었다”고 되어 있는데,⁸³⁾ 이때의 δημοσιεύειν도 ‘공인의사’라는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 것이다.⁸⁴⁾

고전기 아테나이에서의 이 용례가 ‘공인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아리스토파네스의 문제의 구절은 보다 자연스럽게 읽히질 수 있게 된다. 농부의 요청에 대한 디카이오폴리스의 거절은 자신이 환자를 돌볼 의무가 있는 공의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의사로 공인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피탈로스를 찾아가라는 그의 권고는 공인은 받았으나 이후에 실력이 없다고 소문이 난 의사를 찾아가라는 것이므로 희극적 요소는 전혀 손상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 용례는 크세노폰의 「회상록」의 해당 구절에 적용되어도 전혀 무리없이 읽히게 되는 것이다.

의사의 수급이 비교적 여유있던 특정기간 동안 — 전5세기부터 전3세기까지의 기간을 포함한 —의 아테나이에서, 그리고 헬레니즘기를 포함한 전기간 동안에 걸친 코스에서는 공의제도가 의사의 자질에 대한 공적보증의 기능을 담당하였다는 결론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결론이 고대 그리스에서 의사면허제도와 유사한 어떤 시도가 있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의사 자격을 주는 근대의 면허제도와 최고 수준의 몇몇 의

79) Cf. Cohn-Haft, 같은 책, pp. 58-60.

80) Cf. Platon, 「고르기아스」 514d.

81) 따라서 흔히 ‘공의’로 번역하는 δημοσιεύων에 대한 플라톤의 용례는 ‘공적으로 인정된 의사(publicly recognized as a physician)’라는 것이 Cohn-Haft의 해석이다. Cf. Cohn-Haft, 앞의 책, p. 60.

82) Doc. No. 8. Cf. Cohn-Haft, 같은 책, p. 11.

83) Doc. No. 5.

84) 이것을 ‘공의’로 번역하고 나아가 이 구절이 공의제도가 무료진료를 위한 것이었음을 말해준다고 보는 것은 문맥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의 자신은 폴리스로부터 일정 급여를 보장받게 되므로 의사의 편에서는 무료진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를 ‘공인의사’로 인정하는 제도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며, 게다가 후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 아마도 일년인 — 유효 기간이 있었다는 것은 근대의 면허제도와 양적인 차이도 있었음을 말해 준다. 물론 의료종사자의 숫자가 상당히 제한된 상황에서 최고 수준의 몇몇 의사를 ‘공인’하는 것이 실제로는 자격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기능을 갖추기도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차이는 면허제도가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통제인 반면, ‘공인의사’ 제도는 보다 양질의 의료를 위한 의사의 노력을 부추기는 사회적 誘因이며 상급제도였던 것이다.

V.

한편 첫번째 가능성의 검토에서 드러났듯이 상주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 보수를 보장하고 공의를 임명한 폴리스의 입장에서도 가능하다면 능력있는 의사를 확보하려 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또 여러 명의 개업의 가운데서 ‘공인의사’로 선출된 두번째 경우의 의사도 그 명성이 경제적 수입 등으로 보상된다면 특정 지역에 일정 기간동안 머물 의무를 굳이 기피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공의제도는 이미 능력이 인정된 의사를 해당 지역내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세번째 가능성은 논리적으로는 앞의 두가지 목표 모두로부터 생겨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폴리스의 입장에서는 명성이 널리 알려진 의사와 직접 접촉하거나, 아니면 코스에 의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겠는데, 두 방법 모두에 공통된 문제는 책임자를 구할 수 있느냐는 것과 그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비문증거들은 양 측면의 고려와 그에 따르는 노력들이 실제로 행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헤르미아스는 고르틴에서 공의로 활동하였는데,⁸⁵⁾ 그는 고르틴 시민들의 요청을 받은 코스 당국의 협력으로 그곳에 보내졌다. 그러나 코스 내에서의 추천이 그가 먼저 지원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코스의 의사들을 통제하는 어떤 공식적인 기구에 의해 주도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⁸⁶⁾ 어쨌든 요청에 의한 파견이었음이 비문기록에 명시된 예로는 헤르미아스가 유일하지만, 그 경우가 예외적이었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의사가 없던 고르틴에서 코스 출신의 의사를 확보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은 그의 고르틴 입성 시와 의사로서의 능력을 입증한 후 5년 뒤에 있었던 귀향 시에 행한 의식에 반영되어 있다.

모든 점에서 나무랄 데 없이 그[헤르미아스]는 자신의 솜씨와 호의에 걸맞게 훌륭하고 근면하게 고르틴의 시민들과 기타 거주민들을 돌보면서 5년동안 머물렀고 열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큰 위험에서 구하였다. … 그가 민회에 참석하여 개인적 용무 때문에 자신의 의무를 면제하도록 요청했을 때 우리는 동의하였다. 우리는 그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표시하려는 열망에서 시민인 소아르코스과 키다스를 그와 함께 파견했고, 또 고르틴에 대한 그의 미덕과 선의를 기리고 훌륭한 의사이며 뛰어난 인격자인 사람을 파견해 준 때문에 코스 시민들을 기리기로 결정하였다.⁸⁷⁾

85) Doc. No. 19.

86) Cf. Cohn-Haft, 앞의 책, pp. 65-66.

87) *Inscriptiones Creticae opera et consilio Friderici Halbherr Collectae*, IV. 168, 2행 이하. Cf. S.M.

인용된 내용에 이어 고르틴 시민들이 헤르미아스에게 부여한 여러 명예규정들이 나열되어 있는 이 비문은 명예입법에 의례히 따르기 마련인 상투적인 어투를 감안하더라도 최고의 찬사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었다.⁸⁸⁾

한편 헤르미아스에 대한 비문 만큼 공의의 임용절차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없지만, 해당 폴리스들이 대상자를 지명하고 “찾아 나섰다”고 표현하고 있는 비문들이 몇 개 남아 있다.⁸⁹⁾ “찾아 나섰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공인의사’로 선출되었거나 이를 포함한 의사로서의 명성과 공적을 기리는 명예입법 만큼 확실한 정보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명예입법은 해당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능력을 공증받는 공적기록이며 좋은 선전거리였다.⁹⁰⁾ 게다가 이 법령을 실은 비문들의 말미에 자주 규정되어 있듯이 그 사본이 해당 의사의 출신지에 보내지며⁹¹⁾ — 폴리스들 간의 친선을 보여 주는 외교형식으로 실제로 보내졌던 경우가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되는데 — 이는 나중에 출신지에서 그 의사의 능력과 업적을 기리는 또 다른 비문을 건립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이다.⁹²⁾ 이같은 상황이었다면 특정 폴리스에서의 명예입법이나, 아니면 ‘공인의사’로의 선출은 이후 해당 의사의 자격증, 혹은 면허증의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의제도는 그리스 의사들의 의료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여라는 측면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은 의료에 대한 일반적인 통제로 파악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공의를 조직화된 의료체계의 산물로 이해하려 해서도 안될 것인데, 이 경우 부딪히는 곤란중의 하나는 이 직책에 대한 일관된 명칭이 없었다는 사실인 것이다. 공의는 특정 공동체내에 향존하던,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계속 자리를 채우도록 설치된 관직이 아니었으며, 다만 해당 의사에게 호의를 표시하는 방편의 하나였던 것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머무는 것을 제외하면 공의의 의무는 본질적으로는 일반 개업의와 차이가 없었던 것 같다.⁹³⁾ 전2세기의 크레타 섬의 울로오스의 한 주민이 표현하고 있듯이 환자에게는 의사가 공인이건 개인이건 차이가 없으며,⁹⁴⁾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찾아갈 의사가 있느냐 하는 점이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공의제도가 특정 지역 및 시기에 국한되지 않았고, 또 정치형태와도 무관하게 여러 폴리스에서 유지되었다는 사실은 이 제도가 무료시술을 위한 ‘계

Sherwin-White, *Ancient Cos* (Göttingen, 1978), p. 267, 주) 58.

88) 공의로서의 헤르미아스를 찬양하는 비문은 이것 이외에도 크노소스 및 할리카르나소스의 시민들이 만든 것이 현존하는데, 할리카르나소스에서는 외제대리인(proxenoí)의 지위와 화판이 수여되었다. Cf. Sherwin-White, 같은 책, p. 268.

89) Doc. No. 43, 11-12행에는 μεταπεμφθεις υπό τας πόλιος [μ]ετὰ πρεσβείας라는 표현이 있고, Doc. No. 47, 9행에는 παρακληθεις τε ἐπὶ το ἔργον이란 표현이, 또 Doc. No. 51, 9-11행에는 ἀ[ποσταλέντων ποτ'] αὐτὸν γραμμάτων, καθὼς ἐψάφιστο, ὅπως ἤξει ποθ' ἄμει ιατρεύων이라는 표현이 있다. Cf. Cohn-Haft, 앞의 책, pp. 5-6, 주) 6.

90) Cohn-Haft, 같은 책, p. 66.

91) Doc. Nos. 16, 18은 코스에서 발견된 크노소스의 법령들이며, No. 19는 코스에서 발견된 고르틴의 법령이다. 그밖에 Doc. Nos. 20, 28, 29, 34, 39, 41, 42, 43은 특정 폴리스들 — 아마도 해당 의사가 이미 방문했거나, 아니면 이후에 방문하기를 원했던 — 에 보내기로 했던 사본들이며, Doc. Nos. 46, 48은 페르기아에서 발견된 셀레우케이아의 법령들이다.

92) Doc. Nos. 28, 29, 39에는 해당 폴리스에서 명예입법된 코스 의사들이 이 때문에 코스에서도 명예입법의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고르틴, 크노소스, 할리카르나소스에서의 명예입법 때문에 코스에서도 헤르미아스에 대해 명예입법하도록 승인되었다.

93) Cf. Cohn-Haft, 앞의 책, p. 54

94) Doc. No. 42.

급 복지'의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⁹⁵⁾ 공의제도의 마련은 폴리스 내부의 사회적 요소보다는 고대 그리스 사회 전체에 공통된 의사의 수급 실정에 부수된 현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공의가 테모스 등의 승인 없는 의료행위를 행했을 때도 그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의무가 없었던 만큼 아테나이 등의 '공인의사'에게는 특권도 없었으며, 아마도 폴리스 당국이 지급하는 일정금액의 보수, 혹은 보상금도 없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공인의사'에게는 이를 충분히 보상할 만한 명성이 보장되었던 것이다. 역으로 이 제도를 마련한 입장에서 볼 때 공의제도는 무엇보다 먼저 해당지역에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코스와 아테나이 같은 곳에서는 이 처음의 목적에 의사의 자질에 대한 공적 보증이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공의의 선출과정은 경제적 誘因이라는 시장의 원리로부터 명예의 확보라는 경쟁의 원리로 옮겨졌던 것이다.

95) Cf. Cohn-Haft, 앞의 책, pp. 40-41